

IFRS in Focus

IASB는 '이연법인세: 기초자산의 회수'에 관한 공개초안 발표

목차

- 제안사항
- 경과규정
- 시행일

요점

- 공개초안(ED)에서는 IAS 12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 예외규정은 특정 자산의 장부금액 전체가 처분을 통해 회수된다고 가정하여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소비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 예외규정은 IAS 40에 따라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자산 또는 IAS 16과 IAS 38에 따라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자산에 적용된다. 또한, 취득자가 사업 결합 이후 IAS 40의 공정가치모형 또는 IAS 16과 IAS 38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도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 의견수렴기한은 2010년 11월 9일까지이다.

제안사항

2010년 10월 10일, IASB는 ED/2010/11 '이연법인세: 기초자산의 회수 - IAS 12 개정 제안(Deferred Tax: Recovery of Underlying Assets - Proposed amendments to IAS 12)'이라는 제목의 공개초안(이하 'ED'라고 함)을 발표하였다. ED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측정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ED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고 주관적인 특정 국가의 우려에 대응하여 발표된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원칙은 특히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에 적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투자부동산은 가치상승 뿐만 아니라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기업이 보유할 수도 있으며, 세법상 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적용되는 세율이 사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적용하는 세율과 다를 수도 있다.

IAS Plus website

We had over 11 million visits to our www.iasplus.com website. Our goal is to be the most comprehensive source of news about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on the internet. Please check in regularly.

For more useful information please see the following website:

www.iasplus.com
www.deloitte.com

또한, 세법상 회수방식에 따라 동일한 자산에 적용되는 세무기준액이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처분시 인플레이션 조정후 원가를 적용하지만, 감가상각비는 공제되지 않거나 최초 원가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원칙을 실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혼란과 잠재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IASB는 아래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하여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 IAS 40의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투자부동산
- IAS 16 또는 IAS 38의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서 공정가치모형 또는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후속 측정하는 경우

ED는 기업이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경제적 효익을 소비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이연법인세부채의 측정에 자산의 장부금액 전체가 처분을 통해 회수된다고 전제하여 산정한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제안하고 있다.

논평

제안된 개정사항에서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IAS 12의 현행 규정을, 특정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의 장부금액 전체가 처분을 통해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으로 대체하고 있다.

몇몇의 경우 현재 자산의 일부는 사용을 통해, 일부는 처분을 통해 회수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제안된 개정사항은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은 자산 전체가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해 회수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처분시 과세되지 않는 국가에서 투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IAS 40에 따라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은 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손익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기업이 당해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가 처분을 통해 회수로 인한 세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경과규정

ED는 IAS 12 개정사항을 소급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제안된 개정사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사업결합에서 최초로 인식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포함)를 소급하여 재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안된 개정사항이 시행될 경우, SIC 21 '법인세 - 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를 대체한다.

시행일

의견수렴기간은 2010년 11월 9일에 종료된다. ED에서 시행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IASB에서는 ED에 대한 의견을 고려한 후 시행일을 결정할 것이다.

주요 연락처

IFRS global office

Global IFRS Leader – Clients and Markets

Joel Osnoss

ifrglobalofficeuk@deloitte.co.uk

Global IFRS Leader – Technical

Veronica Poole

ifrglobalofficeuk@deloitte.co.uk

Leader – Global IFRS Communications

Randall Sogoloff

ifrglobalofficeuk@deloitte.co.uk

IFRS centers of excellence

Asia-Pacific

Korea

이길우

kilwlee@deloitte.com (Tel: 02 6676 3980)

Hong Kong

Stephen Taylor

iasplus@deloitte.com.hk

Melbourne

Bruce Porter

iasplus@deloitte.com.au

Tokyo

Shinya Iwasaki

iasplus-tokyo@tohmatu.co.jp

Americas

New York

Robert Uhl

iasplusamericas@deloitte.com

Montreal

Robert Lefrancois

iasplus@deloitte.ca

Buenos Aires

Fermin del Valle

iasplus-LATCO@deloitte.com

Europe-Africa

Brussels

Laurent Boxus

BEIFRSBelgium@deloitte.com

Copenhagen

Jan Peter Larsen

dk_iasplus@deloitte.dk

Frankfurt

Andreas Barckow

iasplus@deloitte.de

Johannesburg

Graeme Berry

iasplus@deloitte.co.za

London

Elizabeth Chrispin

iasplus@deloitte.co.uk

Madrid

Cleber Custodio

iasplus@deloitte.es

Moscow

Michael Raikhman

iasplus@deloitte.ru

Paris

Laurence Rivat

iasplus@deloitte.fr

Rotterdam

Ralph ter Hoeven

iasplus@deloitte.nl